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18504
----------	-------

제안연월일 : 2026. 4. .

제안자 : 국방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다음 2건의 법률안을 국방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건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	전체회의 상정일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9954	홍기원의원	2025. 4. 18.	2025. 9. 2.
	9955	김현정의원	2025. 4. 18.	2025. 9. 2.

나.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26. 3. 23.)에서 심사한 결과, 이들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다.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방위원회(2026. 3. 24.)에서 이러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상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

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한미군의 기지이전을 위한 시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고, 주한미군기지가 이전되는 지역에 대한 개발사업과 지원대책 등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2004년 12월 31일 제정되었음.

그런데 평택시의 지역개발을 위해 추진하고 일부 사업들이 완료되지 않았고, 공여해제반환재산의 매각 부진과 용산 잔류 미군시설의 이전 사업이 추진 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현 특별법의 준치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26년에서 2030년까지로 4년 연장하여 용산 잔류 미군시설 이전의 본격적인 추진과 공여해제반환 재산 매각 등을 통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부칙 제2항).

법률 제 호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7271호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항 중 “2026년”을 “2030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후의 경과조치) ① 이 법의 유효기간 중에 주한미군 시설사업시행자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한미군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 법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8조의2,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법의 유효기간 중에 제16조 각 호에 규정된 자가 평택시개발사업에 착수하였을 경우에는 이 법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제24조의2, 제25조,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2

9조의2,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이 법의 유효기간 중에 국제화계획지구개발사업시행자가 제2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 법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제27조,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법률 제7271호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부칙</p> <p>② (유효기간) 이 법은 <u>2026년</u>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p>	<p>법률 제7271호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부칙</p> <p>② (유효기간) -----<u>2030년</u>----- -----.</p>